

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7 ~ 40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7. 11. 15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(2006.12.30) 및 공유재산 관리기준(행정자치부, 2007. 3. 9)에 따라 우리 군의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일치시키기 위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토지의 지하·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 삭제(안 제29조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음
- 나. 제32조 중 “영 제35조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5조”로 변경(안 제32조)
 -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 과 혼돈을 방지하기 위함
- 다. 제39조제1항 중 “영 제27조제8항”을 “영 제42조”로 변경(안 제39조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의 관련 조문 변경
- 라.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및 매각기준 명시(안 제40조)
 -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사유건물에 대하여는 「건축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제한
 -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
 - 매각시 잔여지가 「건축법」 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음.
 - 군의 읍·면지역에서는 1,000제곱미터 이하
- 마. 분수림을 규정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7조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삭제(안 제44조)
- 바.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 3배 증액(안 제64조)
 - 총보상금 : 1,000만원 → 3,000만원
 - 필지별 보상금 : 100만원 ~ 200만원 → 300만원 ~ 600만원으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제6항, 제47조, 제84조
「공유재산관리기준」(행정자치부)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다. 그 밖에

(1)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(2)입법예고(2007. 9.10. ~ 9.30.)결과 : 의견 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”를 “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거창군(이하“군”이라 한다)”를 “**군**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거창군수(이하“군수“라 한다)”를 “**군수**”로 한다.

제29조를 삭제한다.

제31조제4항 중 “30%”를 “30퍼센트”로 한다.

제32조 중 “영 제35조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5조”로 한다.

제39조 본문 중 “영 제27조제8항”을 “영 제42조”로 한다.

제40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제4호 중 “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
이 있는 토지”를 “군의 소유가 아닌 「건축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
가를 필한 건물”로, “(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
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)”을 “(다만, 단독주
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)”로, “있다.”를 “있으며, 매각시 잔
여지가 「건축법」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

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제5호 중 “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”를 “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,000제곱미터 이하의”로, “50%”를 “50퍼센트”로 한다.

제44조를 삭제한다.

제64조제1항 중 “1,000만원”을 “3,0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제1호 중 “200만원”을 “6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제2호 중 “100만원”을 “3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명 :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거창군(이하“군”이라 한다)</u>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관리책임) ① <u>거창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</u>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② ~ ③ (생략)</p> <p>제29조(토지의 지하,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)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명 :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<u>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관리책임) ① <u>군수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1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%를 적용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(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) ×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÷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(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)</p> <p>⑤ (생 략)</p>	<p>제31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30퍼센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</p> <p>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(이하 이 조에서 “대부료등” 이라 한다)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	<p>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</p> <p>----- ----- ----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----- ----- 제35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9조(조성원가 매각)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(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)와 투자개발비(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)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39조(조성원가 매각) 영 제42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「건축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(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)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(1,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)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</p> <p>2. ~ 3. (생략)</p>	<p>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삭제>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4조(분수립의 설정)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분수립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64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, 총 보상금은 <u>1,000만원</u>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<u>200만원</u>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.</p> 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2.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<u>100만원</u>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64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 ①----- ----- ----- ----<u>3,000만원</u>-----.</p> <p>1. ----- -----<u>600만원</u>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300만원</u>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